직인생략



위 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 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89-2410호

시행일자 2017. 6. 21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일괄 공개 알림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워합니다.
- 2. 관련근거: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-4693(2017. 6. 19.)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(예규 제95호, 시행 17.5.1.)
- 3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·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'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'을 제정·운영하고 있는 바,
- 4. '17.5.1.자로 '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' (예규 제95호)을 개정하여, '지침'은 '공무원지침서'로, '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'는 '민원인안내서'로 분류를 변경하고, 기등록된 지침서등을 일괄 재분류하였습니다.
- 5. 이에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·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분류된 지침서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고 지침서등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,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재등록 지침서등 확인: www.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법령정보 → 공무워지침서·민원인안내서

6. 아울러 지침서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(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, 전화: 043-719-1531, 팩스: 043-719-1500, optjjy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 현황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 (각과개원의협의회장)